

## 직업성 질병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처법은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중처법 적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위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왼쪽 표 참조).

중처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등 24개 질병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조치들을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

다만, 이는 제3자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만약 위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처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요지이므로 정확한 적용 대상, 기준 등은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li> <li>•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배치</li> <li>•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실시.</li> <li>•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li>•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li> <li>•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li> </ul> |
|---|---|

앞서 살펴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아래 내용은 요지이므로 정확한 적용 대상, 기준 등은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 <li>•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 <li>•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ul> |
|---|---|